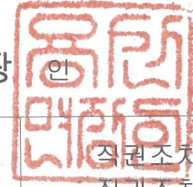


##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2년 09월 05일

용산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송 *선	송 *선 1956-08-15	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	직권말소 2022-09-05